

中小企業의 租稅支援 制度와 節稅效果

康 熙 壽*

目 次

- I. 서 론
- II. 국내중소기업의 환경
- III.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 IV. 중소기업의 절세효과
- V. 결 론

I. 序 論

금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확충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외에도 중소기업이 지역에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8년 기준 국내 전체사업체수 1,224,773개중 1,208,261개가 중소기업체에 속하여 중소기업비중이 98.7%에 달하며 종업원수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63.0%이고 생산액 및 부가가치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들은 각각 46.3% 및 40.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기업체수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며,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한 경제,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經商大學, 副敎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금융지원, 조세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사업 영역 보호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들 수 있다. 이 중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조세지원수단을 개발한다거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조세부담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인데, 현재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조세지원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

1.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법에 해당하는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또는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인 경우는 20인) 이하인 기업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동표의 종업원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은 동법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자산 규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조감령 11조 1항). 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종업원수의 기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상용종업원)로서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의 인원수로 한다(조감규칙 제4조).

2) 자산총액의 기준

사업년도말 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대차대조표 차변합계)으로 하되

-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을 자산가액에 산입하고,
-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의 차변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법인22601-2969. 86. 10. 4).

3)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의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인원, 시설)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등 중소기업

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표 1〉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업 종		인 원 (1)	자산총액 (2)	중소기업판정
제 조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동법, 령별표1의 인원	동법, 령별표2	(1) (2) 동시충족
	기타 업종	300인 이하	동법, 령별표2	(1) (2) 동시충족
광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동법, 령별표1의 인원	"	"
	기타 업종	300인 이하	"	"
건 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동법, 령별표1의 인원		(1) 만 충족
	기타 업종	200인 이하		"
운 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동법, 령별표1의 인원		"
	기타 업종	300인 이하		"
수 산		300인 이하		"
도 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동법, 령별표1의 인원		"
	기타 업종	20인 이하		"
소 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동법, 령별표1의 인원		"
	기타 업종	20인 이하		"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400인 이하		"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200인 이하		"

자료: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1992, p. 25.

4)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분류표 또는 소분류표에 의하여 판정케 되며, 기본통칙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통칙 2-4-4……13)

- ①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 ② 도축장경영업(제조업)
- ③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제조업)
- ④ 물고기, 갑곡류, 연체동물, 해초류 및 수산동물 등을 염장, 건조, 탈수, 훈제, 절임, 통조림 및 급속냉동하는 사업(제조업)
- ⑤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항만, 하역사업(운수업)

(2)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은 사업

- ① 지입료수입만이 있는 사업
- ② 토사석채취업
- ③ 타인에게 물품의 가공을 의뢰하여 납품하는 사업(서적출판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사업겸업시의 중소기업판정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수입금액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한다.

이 때 중소기업해당사업이 기타사업보다 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중 하나라도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며(조감통칙 2-4-10……13), 사업년도중에 겸업한 경우에도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겸업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사업년도중에 중소기업해당사업을 겸업하게 되었다고 그것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되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본다(조감통칙 2-4-11……13).

6) 경과조치

중소기업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소기업의 해당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 (1) 규모의 확대 및 다른 중소기업자와 합병의 경우
- (2)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아 규모가 확대된 경우
- (3) 중소기업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대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근대화된 경우
- (4)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전환한 경우
- (5)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을 한 경우
- (6)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7)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계열화된 경우

2. 중소기업의 회계실무환경상 특성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면에서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표 2>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산업전체의 사업체수는 총 1,224,773개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체수는 1,208,261(98.7%)이고, 300인 이상인 대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수는 16,512개(1.3%)이다. 종업원수 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이 63%, 대기업이 37%, 생산액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46.3%, 대기업이 53.7%, 부가가치면에서는 중소기업이 40.3%, 대기업이 59.7%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산업전체 비중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업 원 수		생 산 액		부 가 가 치	
	계	%	천 명	%	억 원	%	억 원	%
중소기업	1,208,261	98.7	4,820	63.0	859,310	46.3	218,840	40.3
대 기업	16,512	1.3	2,827	37.0	996,079	53.7	324,096	59.7
계	1,224,773	100.0	7,645	100.0	1,855,389	100.0	542,936	100.0

자료: 주요국의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89. 12. p. 11.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러분야에서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기업체수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부가가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며,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한 경제,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현행 세제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에 의하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전국의 경우 38.6%(제주도의 경우 24.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제도를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른다가 23.0%(제주도의 경우 57.5%), 번거로우며(16.1%), 전문요원이 없으며(10.5%), 아예 기장하지 않는 경우(3.7%) 등이 기존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표 3〉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 활용상황

(단위 : %)

구분 제조업	활용함	활용못함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지원제도 모 름	장부기장 안 합	전문요원 없 음	번거로움	별도혜택 없 음	기 타
전 국	38.6	61.4	23.0	3.7	10.5	16.1	46.6	0.1
제 주 도	24.5	75.5	57.5	8.1	2.5	16.9	15.6	-

자료: '90년판 중소기업연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0. 8. pp. 588~589.

제주도의 경우 세제지원제도 활용으로는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에 그치고 있다. 1990년말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별로는 증자소득공제 48개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2개 기업,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개 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자료: 제주세무서).

Ⅲ.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제도

우리 나라의 현행 세법은 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등을 통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의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특례조치를 마련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현행 조세법하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주요 정책목 적별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1.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업년도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감법 제 13조).

그리고 이러한 손금산입후 4년 동안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 등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3년간 균등하게 임금산입하여야 한다(조감법 제13조 제2항 2). 또한 중도에 폐업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잔여분 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조감법 제13조 제2항). 이처럼 미사용분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에는 일변 4전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세하게 된다(조감법 제13조 제4항, 동시행령 제7조 제2항).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제조업, 광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 기술개발용역비 등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 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과 세법이 정하는 직업훈련비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감법 제17조 제1항).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감법 제14조의 2).

4) 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적용시 우대

내국법인이 1회에 5戶 이상(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는 신축주택호수에 관계없다) 무주택 종업원(출자자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감법 제72조의 2).

5) 생산성향상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그 투자금액의 15%(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때에는 5%)를 세액공제한다(조감법 제71조 제1항).

2. 창업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3831호로 1986년 5월 12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촉진책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첫째 소득세, 법인세를 창업년도와 그 후 3년간은 100%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취득세, 등록세를 창업일로 부터 2년간 50%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창업일로 부터 5년간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및 이 회사와 관련한 주주

및 조합에 대하여도 세제상의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의 세액감면(조감법 제15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을 감면 받는다.

(2)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조감법 제15조 제1항).

(3)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후 3년내 종료사업년도 법인세의 50%, 그후 2년내 종료하는 사업년도 법인세의 30%를 감면 받는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조감법 제15조 제3항).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주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조감법 제5조 제2항, 제3항)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2) 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i)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ii)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얻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결과 완납적원천징수로 일당락되며, 따라서 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조감법 제5조 제2항).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상당액의 세액감면을 인정한다(조감법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 받는다(조감법 제85조의 2).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불산입 조정대상이 된다(조감법 제18조의 2).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투자하거나 또는 융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그 투융자액의 50%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조감법 제54조 제1항). 이와 같은 손금산입 후 4년간에는 당해 투융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 위 준비금과 강제상계하여야 한다(조감법 제54조 제2항). 위의 준비금 중 4년간 발생한 손실과 상계되지 아니한 잔여분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부 익금산입조정되어야 한다(조감법 제54조 제3항).

3.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1)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추가용인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기부금과 구별되며 기업과 관계가

있는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구별된다. 접대비는 접대비, 교통비, 교재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접대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방지와 조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손금용인한도를 규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① 정액기준(년 600만원) ② 자본금기준(월평균자본금 \times 2/100) ③ 수입금액기준(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 \times 1/1,000)의 합계액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액기준이 연간 1,200만원이며 수입금액에는 2/1,0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접대비손금산입용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액기준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법인에 비하여 그 배를 더 늘려주고 있다.

방만한 접대비의 지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대비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기준비율(접대비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비율을 말하는 바 일반법인은 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의 40%, 중소기업의 경우는 30%,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서는 일반법인 35%, 중소기업은 25%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법인 226011-1130, 1961. 6. 4).

2) 사업소세의 세액공제(면세점)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 이는 일정수준 이하의 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면세점제도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기 쉽다는 뜻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3) 증자소득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특례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 이 법인(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동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

터 24개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개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감법 제55조).

증가된 자본금액×당해 사업년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12×공제율
이 때의 증자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상장법인 및 중소기업법인	기타법인
우리사주조합원 금전출자금액	년 17%	년 15%
기타주주의 금전출자금액	년 12%	년 10%

4.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수출손실준비금 증액 설정

세법에서는 수출, 군납 또는 관광사업 등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외화 획득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이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과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그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범위액에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 및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 손실준비금으로 하고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감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간 분할 익금산입한다(조감법 제22조 제3항).

2)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증액 설정

중소기업의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즉 외화수입금액(일반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및 해외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외에 위 외화수입금액의 1%에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경리하도록 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인정한다(조감법 제23조 제1항, 제5항).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3년간 분할 환입한다(조감법 제23조 제3항).

5.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세액면제

(1) 양도한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개인이 양도한 경우) 또는 특별부가세(법인이 양도한 경우)를 면제한다(조감법 제44조 제1항, 동시행령 제38조). 그러나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2)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액 면제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수함에 따르는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84조 제1항 제3호).

(3) 양수하는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세액공제)

위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85조 제1항 제2호).

2)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세액면제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사업전환대상업종(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공장건물 및 부속건물을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사업전환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장단위별이라함은 동일 부지내에서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단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고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전환대상업종의 제품과 대상업종이 아닌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며 동일 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기계장치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기계장치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공장단위로 볼 수 있다.

사업전환대상업종의 고시는 상공부장관이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생활의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환대상업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중에서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추정 고시한다.

- (1) 현저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예상되는 업종
- (2) 기술수준의 현저한 낙후로 제품의 생산성, 성능 및 품질 등에 있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업종
- (3) 무역환경의 변동 등으로 수출이 극히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
- (4) 기타 환경오염방지조치 또는 안전규제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상공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업종

면제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 취득가액이 전환전 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①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용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세액면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1년 이상 사용한 것)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45조, 동시행령 제39조).

②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용자산 현물출자시 등록세의 세액면제

위 ①의 경우에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관한 등기를 행함에 있어 부담할 등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48조 제1항 4호).

③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용자산 현물출자시 취득세의 세액면제

위의 ①의 경우에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85조 제1항 3호).

④ 중소기업사업전환시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의 세액면제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차익)에 관하여는 법인세와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그리고 당해 중소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45조의 2, 동시행령 제38조의2).

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며, 이하 사업전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조감법 제45조의3).

i) 사업전환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ii)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사업전환의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총매출액이 100분의 30이하 로 기존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내에 총매출액 의 100분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중소기업의 협동화 및 계열화지원 조세특례

1)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감법 제59조 5조).

2) 중소기업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50%의 취득세를 세액감면 한다(지방세법 제110조의 4).

3) 중소기업단체가 분양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재산은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 세법 제128조의 2).

4) 중소기업단체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지방세법 제184조의3).

5)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은 투자액의 15%(외국산 기자재의 경우 5%)의 세액공제를 한다(조감법 제71조 제1항 6호).

6)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특별세율 적용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조감법 제8조 제1항, 조감법 제9조 제2항).

7)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기장의무의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조감법 제9조 제4항).

8)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배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공고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조감법 제98조 제5항).

9)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법인세신고기한의 연장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법인세신고기한을 2회 이내에 최장 2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조감법 제8조 제4항).

10)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재평가세의 면제(세액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단행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감법 제8조 제2항).

11) 중소기업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용인

위의 중소기업단체에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특별회비를 손금산입이 가능한 공과금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12)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 등을 받는 개인의 소득세분리과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지배당을 하거나 조합에 회전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개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결과 완납적 원천징수로 일단락되며, 따라서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2의 나).

13)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위탁계획서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세액공제)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의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조감법 제81조 12).

IV. 중소기업의 절세효과

조세부담액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무회계의 입장에서 분류한다면 ①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익금불산입조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소득금액을 줄이도록 하여 그 결과 산출세액이 적게 되도록 하는 방법(손금산입), 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비과세소득을 인정하거나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이도록 하여 그 결과 산출세액이 적게 되도록 하는 방법(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③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산출세액을 면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적게하거나 없도록 하는 방법(세액공제, 감면세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절세효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손금효과와 조세지원효과로 대별할 수 있다.

<표 4>

구 분		발 생 원 인	절 세 항 목
절 세 효 과	손금효과	당 연 손 금 산 입	지출경비: 재료비, 인건비 등 추정경비: 일반상각 등
	조세지원 효과	국가의 조세지원	직접감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면제소득, 세액공제 간접감면: 특별상각, 각준비금

1. 損金算入의 節稅效果

절세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세효과의 발생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모든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이에 따른 절세효과는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손금효과는 특수원가중 회피가능원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을 회피하는 쪽으로 세무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서 접대비지출의 한도가 설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회사의 접대비는 세법상의 손금산입범위 내에서는 한계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세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는 것이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50조).

2. 조세지원제도에 의한 절세효과

1) 직접 감면의 절세효과

직접감면은 조세부담을 연기하거나 임의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세법규정을 적극활용하여 산출세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손금을 늘려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다. 직접감면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유지한다면 그 절세액을 다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간접감면과 다른 것이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공제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설비투자를 요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초과할 때에 절세효과가 있으며 절세효과의 계산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 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저한세제도).

내국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조감법 제91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공제에 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감면특혜규정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2) 세액공제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세액이 된다.

현행 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제도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액공제의 절세효과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나 지출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제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제24조의 3)와 재해손실세액공제(법법 25조)로 구분된다.

〈표 5〉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해외사업소득공제 (조감법 26조)	1. 외화소득금액×2% 2. 소득금액×50% 1, 2중 적은 금액	동 일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조감법 19조)	소득금액×50%	동 일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조감법 20조)	소득금액×50%	동 일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감법 37조)	소득금액×50%	동 일
증자소득공제 (조감법 55조)	증자액×년 10%(15%)	증자액×년 12%(17%)

()내의 숫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자분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제도는 〈표 6〉과 같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일정률이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투자규모에 비례한 지원이 가능하나 설비투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혜택이 없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또한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서로 다른 한계적용세율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의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액공제는 당해년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과 당해년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것이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최저한세(조감법 제88조)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감법 제89조 제1항).

따라서 이월공제의 문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표 6>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조감법 7조)	년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10%	동 일
우리사주취득시의 예액공제(조감법 7조의 2)	년간저축금액 또는 상환액×15%	동 일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조감법 14조의 2)	해 당 없 음	투자금액×5% (외국산기자재 : 3%)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감법 18조)	지출금액×10% + 이전2년간 지출초과금액×10%	지출금액×15% + 이전 2년간 지출초과금액×10%
신기술기업화사업 투자세액공제(조감법 18조)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투자금액×3% (외국산기자재)	동 일
기술개발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공제(조감법 18조)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투자금액×8% (외국산기자재)	동 일
의료취약지역종합병원투자세액공제(조감법 40조의 5)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투자금액×8% (외국산기자재)	동 일
지방이전사업투자세액공제(조감법 43조)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투자금액×3% (외국산기자재)	동 일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조감법 43조의 2)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동 일
사업전환, 주력업종시설투자세액공제(조감법 46조의 3)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투자금액×6% (외국산기자재)	동 일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조감법 71조)	특정설비투자금액×10% (외국산기자재 : 3%)	생산성향상설비투자 투자액×15% (외국산 : 5%)
의료기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감법 71조의 2)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투자금액×8% (외국산기자재)	동 일
임시투자공제(조감법 72조)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투자금액×3% (외국산기자재)	동 일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감법 72조의2)	투자금액×10% (국산기자재)	동 일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감법 72조의 5)	기숙사취득가액×10% (국산기자재)	동 일

(3)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또는 일정비율 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의 감면이란 외자도입법상 면제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또는 일정율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감면에 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감면특혜규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세액감면의 절세효과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 감면이 없었다면 부담하였을 한계 적용세율을 곱하고 이를 다시 감면비율과 곱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조세제도를 이용한 국고보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직접지원방식인 세액감면은 일정기간동안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혜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2) 간접 감면의 절세효과

(1) 준 비 금

과세이연에 의한 재정자금의 무이자용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간접지원방식인 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특정사업에 대하여 장차 발생할 비용이나 또는 시설개체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환입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에 충당하게 하는 세법상의 손금이다.

준비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직접지원제도와는 달리 특별상각과 더불어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여 주는 간접지원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련한 의사결정방법으로 현금할인흐름에 의한 경제성 평가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간접지원에 의한 절세효과를 순현재가치법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구 분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외국인 투자지분(외도법 제14조)	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의해 3년 간 전액, 그 다음 2년 50%	동 일
기관투자자의 국공채이자(조감법 제4조 3)	상환기간 1년미만 해당세액의 50% 상환기간 1년이상 해당세액의 75%	동 일
중소기업창업(조감법 제15조 제1항)	해 당 없 음	3년간 법인세 전액 그후 2년간 법인세의 50%

구 분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농공단지입주기업 (조감법 제40조의 4)	2년간 법인세 전액 그후 2년간 법인세의 50%	동 일
의료취약지역병원 신설 (조감법 40조의 5)	3년간 법인세전액 그후 2년간 법인세의 50%	동 일
위탁영농회사(조감법 제40조의 7)	3년간 법인세전액 그후 2년간 법인세의 50%	동 일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 (조감법 제48조의 8)	해 당 없 음	3년간 법인세의 50% 그후 2년간 법인세의 30%
수도권의지역이전 중소기업 (조감법 제43조의 4)	해 당 없 음	3년간 법인세의 50% 그후 2년간 법인세의 30%
사업전환중소기업 (조감법 제45조의 3)	해 당 없 음	3년간 법인세의 전액 그후 2년간 법인세의 50%

준비금계상에 따른 절세효과는 순현재가치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R \times R(1+i) - MR \times \sum_{t=2}^n Rt(1+i)^{-t}$$

단, MR = 한계적용세율

R = 당해년도에 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

Rt = t년도에 비용과 상계되거나 환입될 준비금

i = 자본비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은 다음 <표 8>과 같다.

준비금은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조세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일단 설정한 준비금의 환입에 있어서는 소득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 환입을 규제하고 있다.

〈표 8〉

구 분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감법 13조)	해 당 없 음	사업용자산가액×20%
기술개발준비금(조감법 16조)	· 수입금액×3% · 수입금액×4%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동 일
수출손실준비금(조감법 22조)	1. 외화수입금액×1% 2. 외화소득금액×50% 1, 2중 적은 금액	외화수입금액의 1% 가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조감법 23조)	외화수입금액×1%	외화수입금액의 1% 가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조감법 27조)	외화수입금액×2%	동 일
해외투자손실준비금(조감법 29조)	해외투자액×20%×당해년도 월수/12	동 일
광업투자준비금(조감법 33조)	광업수입금액×2% 해외자원개발수입금액×4%	동 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조감법 40조의 2)	사업용자산가액×15%	동 일
지방이전준비금(조감법 41조)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가액 ×10%	동 일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감법 41조의 2)	본점건물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10%	동 일
수도권외지역 소재기업 투자준비금(조감법 43조)	사업용자산가액×10%	동 일
투융자손실준비금(조감법 54조)	해 당 없 음	투융자금액×50%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감법 54조의 2)	신용보증총액×2%	동 일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참가준비금(조감법 54조의 3)	전시용 건물연면적×100만원 (㎡당)	동 일
의료시설투자준비금(조감법 71조의 3)	소득금액×20%	동 일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은 임의환입이 인정되지만,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은 임의환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각 준비금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구 분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
종 류	1. 지방이전준비금,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2. 중소기업, 광업,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 수도권의 소재 기업투자준비금 3. 기술개발준비금 4.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참가준비금	1.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2. 투융자손실준비금
미사용시	이자상당액 추징함	추징규정 없음
임의환입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의 추가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기업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의 조기환입을 인정하지만,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준비금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환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의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조기환입을 하는 경우에도 익금에만 산입하지 아니할 뿐 당해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까지 소급하여 손금산입하지는 않는다(감통 3-4-2……13).

자산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충당금 중 미사용준비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려면 미사용준비금의 환입시기를 조정하는 소극적 방법과 미사용준비금 상당액을 상계할 수 있는 투자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2) 특별상각

손금으로 조기에 산입해 주는 세금혜택 가운데 하나가 특별상각제도이다. 특별감가상각은 일반상각비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체금융기능강화를 위한 간접지원의 효과가 있는 조세지원제도이다. 이 경우 절세 효과는 조기상각되는 금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특별상각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에 감가상각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후기에는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된다. 특별상각에 대한 조세감면특혜규정은 <표 10>과 같으며 일반법인과 중소기업법인간에 차이가 없다.

〈표 10〉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신기술사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특별상각(조감법 18조)	· 취득가액×50%(국산기자재) · 취득가액×30%(외국산기자재)	동 일
신기술기업화연구시험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18조)	취득가액×90%	동 일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25조)	· 일반상각범위액×30% 외화수입금액÷총수입금액 · 일반상각범위액×30% (외회획득사업수입금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동 일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32조)	일반상각범위액×50%	동 일
광업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36조)	· 일반상각범위액×100% · 일반상각범위액×50% (석탄광업의 광산용 주택)	동 일
방위산업 또는 항공공업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40조)	일반상각범위액×100%	동 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40조의3)	일반상각범위액×100%	동 일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43조)	취득가액×50%(외국산기자재 : 30%)	동 일
도시권외지역이전법인본사 특별상각(조감법 43조의 3)	일반상각범위액×50%	동 일
산업합리화시설 등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46조의 3)	일반상각범위액×100%	동 일
특정설비투자자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71조)	취득가액×50%(외국산기자재 : 30%)	동 일
의료기기투자자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71조의 2)	취득가액×50%(외국산기자재 : 30%)	동 일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72조의 3)	일반상각범위액×100%	동 일
종업원기숙사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72조의 5)	일반상각범위액×100%	동 일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상각(조감법 71조)	취득가액×50%(외국산기자재 : 30%)	동 일

특별상각과 준비금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특별상각, 준비금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 결 론

조세지원제도는 기업간 지원의 독립성이 높아 요건만 갖추면 광범위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불가피해질 금융정책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지원수단으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요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세제지원제도의 내용은 다양하며, 그 지원의 폭도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세법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세제지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기장에 의한 실사가 전제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소기업은 그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

한편 현행의 조세지원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대기업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감면요건의 완화 및 세무신고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세금부담경감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직접감면 위주의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에게 세제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각종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및 특별상각의 계상으로 법인세 등이 감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절세효과를 고려하고, 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자는 절세효과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